
2024년 중대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계획

목 차

I. 개요 및 주요내용	2
II. 운영성과 및 반성	4
III. 추진목표 및 전략	6
IV. 세부 추진 계획	8
V. 중대재해예방 투자 계획	14
VI. 행정사항	15

- 붙임**
1. 중대산업재해 및 안전·보건관리 성과표 1부
 2. 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사항 점검표 및 체크리스트 1부
 3. 중대시민재해 의무 이행사항 점검표 및 체크리스트 1부
 4.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1부

I. 개요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을 통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 제5장
-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제6조

□ 중대재해 적용범위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1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 (부상) 동일한 사고 > 6개월 이상 치료 / (질병) 동일한 유해요인 > 1년 이내 3명 이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2 중대시민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 질병자 10명 이상
 ※ (부상) 동일한 사고 > 2개월 이상 치료 / (질병) 동일한 원인 > 3개월 이상
 ☞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재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

□ 보호대상 및 대상시설

구분	보호대상	대상시설
중대산업재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전 사업장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운동시설 5,000㎡이상) • ○○○○○○, ○○○○○○ (복합시설 2,000㎡이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1. 중대산업재해 [법 제4조]

- 중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중대시민재해 [법 제9조 2항]

-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한 조치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중대산업·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제7조, 제10조]

4. 사업주 및 근로자 의무

사 업 주	근 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시책 등을 준수 ·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 의무 · 산업재해 기록,보존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게시 등의 의무 · 유해·위험한 장소에 안전·보건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보건을 유지·증진 ·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알리는 등의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가 행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사업주가 제공하는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 의무가 있다.

II. 2023년도 운영성과 및 반성

운영성과

○ -----

○ -----

○ -----

○ -----

○ -----

○ -----

○ -----

○ -----

○ -----

□ 반 성

○ 지속적인 산업재해 발생(2019~2023년 / 5년)

구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주차시설	3건	1건	-	1건	1건	-
체육시설	1건	-	-	-	-	1건
공공시설	-	-	-	-	-	-
계	4건	1건	-	1건	1건	1건

○ 산업재해 발생 세부내역 및 재발방지

- 2019년) -----

· 재해장소 : -----

· 재발방지 : -----

- 2021년) -----

· 재해장소 : -----

· 재발방지 : -----

- 2022년) -----

· 재해장소 : -----

· 재발방지 : -----

- 2023년) -----

· 재해장소 : -----

· 재발방지 : -----

Ⅲ. 추진 목표

- 산업재해 발생 제로(Zero)화
- 전 직원 참여 위험성 평가 실시를 통한 위험요소 80%이상 감소
- 안전·보건관리 내실화 및 관리감독자 역량 강화

비 전

구민 생활의 가치를 높이는 행복파트너

목 표

무재해 사업장 달성(산업재해 발생 Zero화)

추진전략

추진과제

**안전보건
내 실 화**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종사자 참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주요 내용 전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 위험성평가를 통한 잠재 위험요소 발굴 및 감소대책 마련

**관리감독자
역할수행
강 화**

-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활동에 관리감독자 적극 참여
- 관리감독자 안전의식 및 대응역량 함양
- 매월 안전점검 순찰 및 개선방향 검토
- 산업재해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재해예방
대책 마련**

-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체계화
- 안전사고 발생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 재해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예산 편성, 집행
-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경영방침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은 재해 및 잠재 위험 요인의 예방과 위험성평가를 통한 위험관리 등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안전·보건 경영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방침을 정하여 성실히 이행한다.

1. 우리 공단은 안전·보건을 경영의 추진과제로 삼는다.
2. 안전·보건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3.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찾아 예방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시행한다.
4. 무재해를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개선을 지원한다.
5. 전 직원은 참여와 소통의 자율적인 안전문화 조성에 적극 앞장선다.

2023 년 3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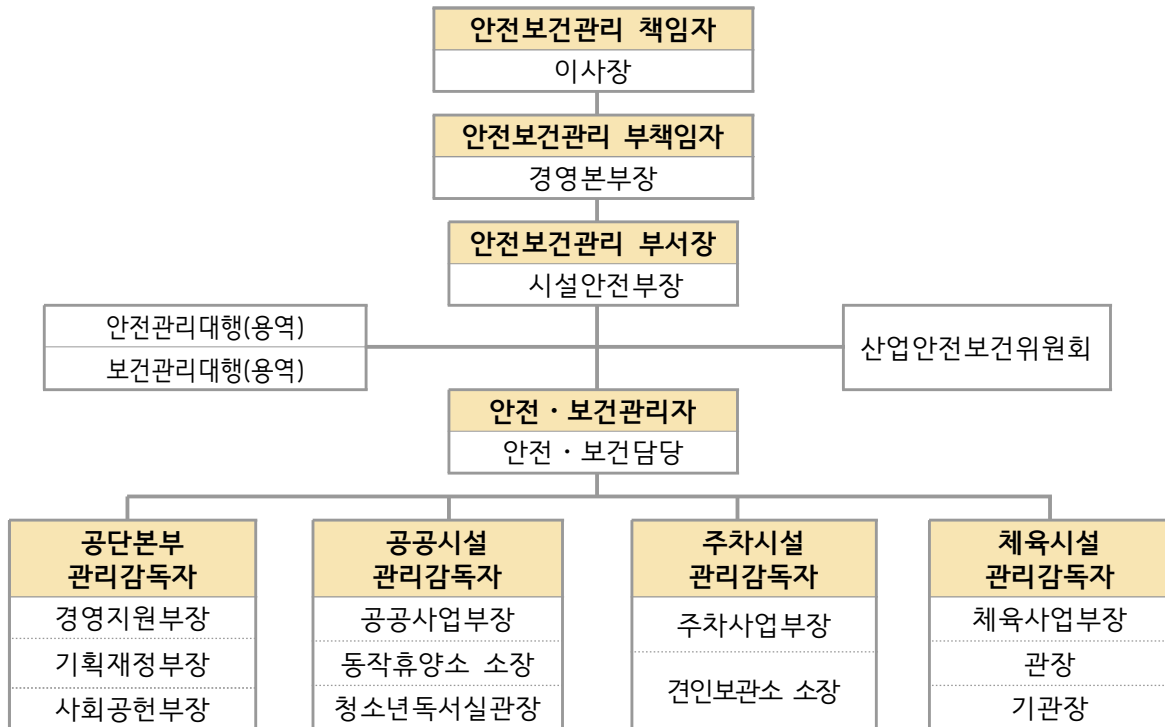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진우

IV. 세부추진 계획

1 중대산업재해 예방

□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도



○ 임무 및 역할

-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
- (안전·보건 부책임자) 산업안전·보건관리 부책임
- (안전·보건 책임자) 산업안전·보건관리 총괄관리 업무
- (안전·보건 담당자) 산업안전·보건관련 보좌 및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 (관리감독자)
 - 1)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2)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등의 점검과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 3) 산업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발생 보고
 - 4)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안전통로 확보의 확인 감독
 - 5)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평가 : 년1회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

○ 위험성평가 방법

- 사업장별 근로자 참여 자발적 작업장·시설의 유해·위험요인 탐색 → 위험성 결정(가능성, 중대성)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발적 예방조치

○ 위험성평가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장소 위험성평가 우선 실시
- 이용객 및 근로자 안전사고 위해요소 사전평가 및 재발방지 대책(개선)
- 사업장 구획(실)별 순회, 교차 점검에 의한 위험성 평가
- 보수작업공정, 작업도구, 유해화학물 취급 등에 따른 위험성 평가

* 공단 산업안전·보건관리 운영 내규 제62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관련근거) 공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 (주요기능)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의결

○ (운영방법) 정기회의(분기별 1회) 개최로 재해예방, 안전관리 관련 사항 협의

○ (위원회 구성)

- 근로자위원 : 근로자측 대표, 근로자 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사용자위원 : 사용자대표(이사장), 사용자위원(부장), 안전·보건관리자

* 공단 산업안전·보건관리 운영 내규 제14조(위원회 구성)

□ 시설관리자 정기 안전운영 회의

○ (주요기능) 실무자 구성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및 현안 당면 문제점 해결방안 토의

○ (운영방법) 정기회의(반기별 1회) 실무자 재해예방, 안전관리 관련 사항 협의

○ (운영구성) 시설안전부장, 안전담당자, 시설별 담당자

□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 (산업안전·보건 교육) 임원, 관리감독자, 근로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
 - 신규채용, 업무 변경 및 위험 작업 시행 시 현장 교육 추가 실시
- 산업안전예방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32조 동 시행규칙 제26조, 29조]

교육명	대상자	교육주최	교육시간(년)
관리책임자교육	이사장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	최초 8시간 이상 (1회/3년 보수교육)
정기안전·보건교육	공단 전직원	관리감독자	1시간/월(사무직) 2시간/월(비사무직)
관리감독자 정기안전교육	관리감독자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	16시간/년(8시간/년)
신규채용자 교육	신규채용자	산업안전·보건담당/ 관리감독자	8시간 이상
직무변경시 교육	직무 변경직원	관리감독자	2시간/월 이상
특별교육	유해·위험작업	관리감독자	2시간이상(간헐적)

* 공단 산업안전보건관리 운영 내규 제21조 ~ 제24조

□ **근로자 유소견자 관리**

- (근로자 건강검진) 직업성 질환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보호
 - 검진 구분 및 주기, 대상자

구 분		실시주기	대 상 자	검진기관
배치전 건강진단		배치 및 신규 입사자	특수검진 대상 작업개소 직원 (주차관리원 야간근무자, 기관실근무자)	고용노동부 지정 검진기관
특수건강검진		1회/년	야간근로자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주차관리원 야간근무자, 기관실근무자)	
일반 검진	사무직	1회/2년	사무직	국가건강검진 지정병원
	비사무직	1회/년	특수검진 제외직원	

* 공단 산업안전보건관리 운영 내규 제44조, 제45조

□ 근로자 및 제3자 도급·용역·위탁 등 수급인, 종사자 보호 대책

○ (작업근로자 보호) 위험작업장 단독작업 제한 등 근로자 보호제도 운영

- 위험 작업 2인 1조 근무 및 신입 근로자(6개월 미만 근속) 단독 작업 제한
- 폭염, 미세먼지 등 이상기후 발생 시 옥외 근로자 작업중지 및 휴식 제도 운영

○ (작업장 시설 안전 조치) 현장 점검 강화 및 미준수 근로자 퇴거 조치

- 주기적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및 개선 계획 자치단체장에게 보고
- 현장 근로자 사전점검 강화 및 미준수 근로자 퇴거 조치
- 산업재해 발생 원인 파악 및 사고기록 보존 의무
- 도급, 발주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점검하여 부실 시 보완 조치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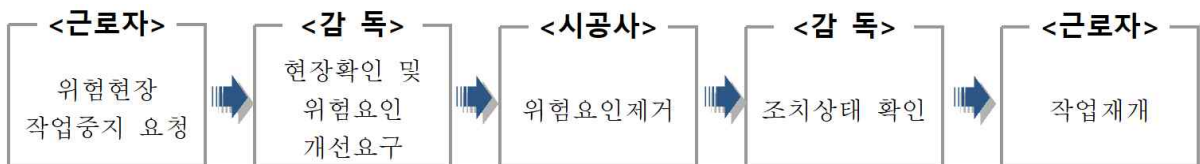
○ (적격수급업체 선정)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 수급인, 종사자 보호

- 적격심사 대상자 평가(계약부서)
 - (공사) 행안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및 (용역) 서울시 「적격심사 세부 기준」 개정내용에 따라 실시
- 수의계약 업체 평가(발주부서/계약부서)
 - 안전보건 확보 부실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 체결 방지토록 안내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발주부서)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 정량평가 항목에 안전 및 보건확보

□ 작업중지 요청제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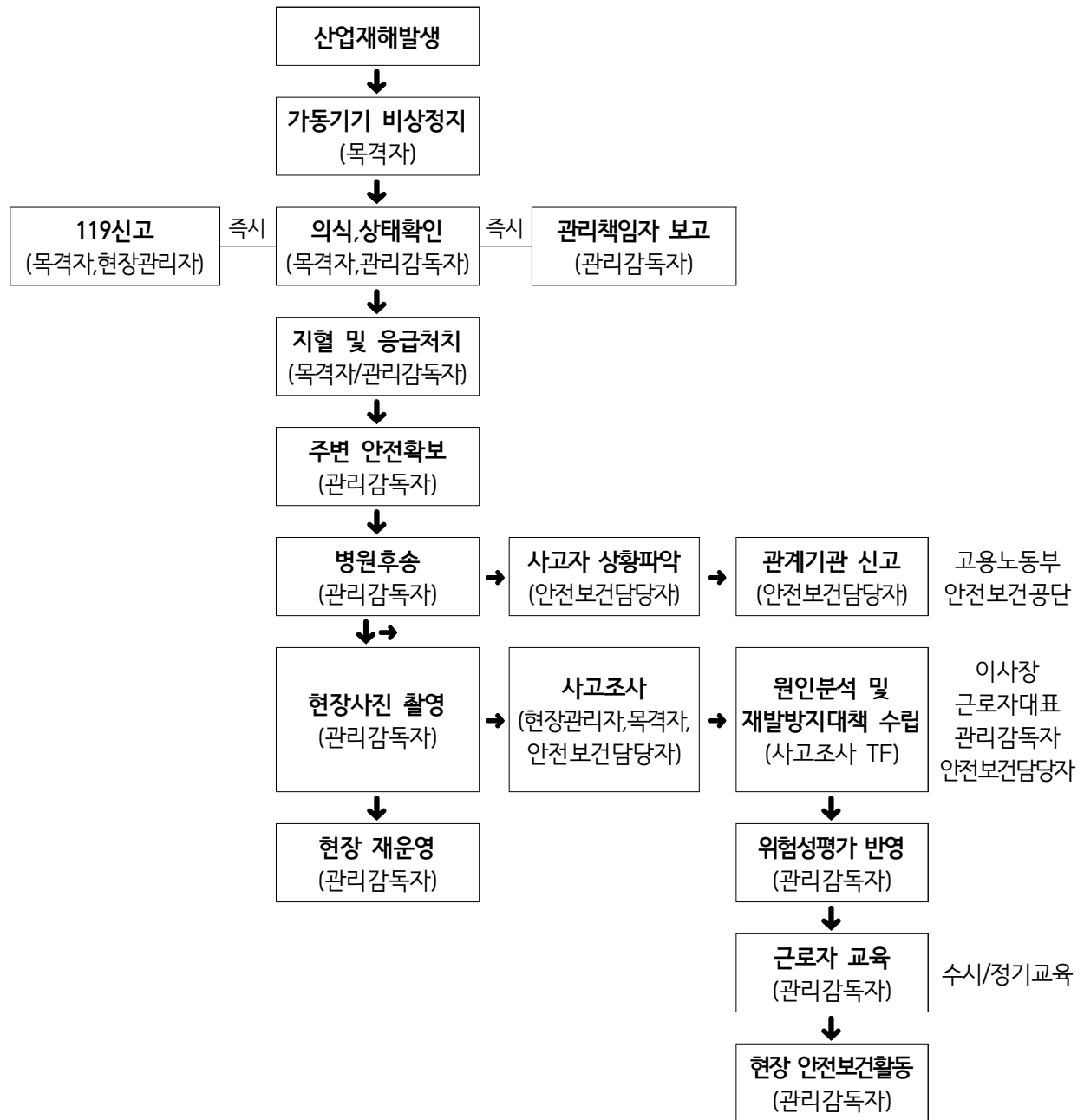
○ (작업중지요청) 현장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발주자에게 직접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제도

○ (시행목적) 현장근로자가 불안정한 작업현장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유도



□ 산업재해(급박한 상황포함) 발생 대응 및 조치

○ 산업재해 발생 대응 프로세스



○ 재해(사고)조사 절차

- 1) (사실의 확인) 산업재해 발생까지의 과정을 파악
- 2) (재해요인의 파악) 물적, 인적, 관리적 측면에서 재해요인을 찾는다.
- 3) (재해요인의 결정) 재해요인의 상관관계와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 간접 원인을 결정
- 4) (계획,대책의 수립) 근본적인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로 동종 또는 유사 재해 방지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2

중대시민재해 예방

□ 시설관리자 정기 안전운영 회의

- (주요기능) 실무자 구성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및 현안 당면 문제점 해결방안 토의
- (운영방법) 정기회의(반기별 1회) 실무자 재해예방, 안전관리 관련 사항 협의
- (운영구성) 시설안전부장, 안전담당자, 시설별 담당자

□ 시설물 안전 점검

- (정기 점검)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지정, 사업장별 체크리스트 이용 안전점검

구 분	안전점검 내용	점검자
점검내용	전기, 보일러, 냉·난방, 승강기, 소방, 주차관리초소 등	관(소장), 기관장
	시설 중요 설비 배관 안전점검	시설담당자

○ (합동 정기 점검) CEO와 고객 참여 계절별 안전점검

- (해빙기) 겨울철 동결과 융해를 반복하면서 악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풍수해)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안전점검
- (동절기) 폭설 및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협조)

- 수시 및 정기점검 과정에서 위험요소 의심 부위의 정확한 분석,판단
- 필요시 전문가 및 전문기관 의뢰, 정밀진단 실시

□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의 관리 및 조치 추진

-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관심 및 홍보 지속
- 위험상황 필요시 긴급 개선조치 시행, 예산확보 대책 강구
- 산업재해발생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중대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예방 관리감독자 주관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 점 검 일 : 6월/12월(반기별 1회)
- 점 검 자 : 관리감독자
- 주관부서 : ----- 및 해당 주무부서

IV. 중대재해예방 투자 계획

자본전출금 활용 중대재해예방 추진 : ----백만원

-
-
-
-
-
-
-
-
-
-

연도별 산업재해 예방 중기 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대행	-	-	-	-	-
관리감독자 및 중대재해예방 전문교육	-	-	-	-	-
근로자 일반, 특수건강검진 비용 지원	-	-	-	-	-
근로자 안전보호장비	-	-	-	-	-
산업안전 진단 용역	-	-	-	-	-
중대재해예방 인증 취득	-	-	-	-	-
응급처치(AED) 물품 유지	-	-	-	-	-

Ⅵ. 행정사항

-
-

- 붙임 1.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성과표 1부
2. 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사항 점검표 및 체크리스트 1부
3. 중대시민재해 의무 이행사항 점검표 및 체크리스트 1부
4.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1부. 끝.